당 진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시 보

선람	기 관 의 장

제236호 2021. 01. 29.(금)

고 시

◦ 제2021-21호 도로명주소 고시…… 1

◦ 제2021-22호 당진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3

◦ 제2021-23호 고대면 진관1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6

◦ 제2021-24호 신평면 신송1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7

◦ 제2021-25호 당진 도시관리계획(한정1지구 산업·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…… 8

◦ 제2021-29호 도로명주소 고시…… 14

공 고

◦ 제2021-161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…… 17

회 람						

발행 **당 진 시** (편집 홍보소통담당관 ☎ 350-3146)

당진시 고시 제2021-21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현황이 있어「도로명주소법」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,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1. 18.

당 진 시 장

○ **도로명주소(부여) :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770-6 외 16건**

지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붙 임 참 조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(☎350-3820~3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**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**

- 도로명주소는 2021. 1. 18.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**도로명주소 변경 등**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※단, 2011. 12. 31.까지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변경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

○ **참고사항**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<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1/18>

순번	지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자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자	도로명부여사유
1	석문면 삼봉리 852-1	석문면 대호만로 1770-6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2-01-01	대호방조제를 가는 도로
2	면천면 죽동리 772-4	면천면 상부로 228-24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2-01-01	자연마을명칭인 상부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
3	석문면 장고항리 458-1	석문면 장고항로 236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2-01-01	법정리명칭 활용
4	송악읍 석포리 26-10	송악읍 정곡로 20-79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2-01-01	법정리명칭 활용
5	석문면 초락도리 505	석문면 초락2로 219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2-01-01	법정리명칭 활용
6	합덕읍 운산리 263-100	합덕읍 덕평로 553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09-08-25	합덕과 신평면의 명칭조합
7	신평면 상오리 339	신평면 덕평로 1245-8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09-08-25	합덕과 신평면의 명칭조합
8	대덕동 1882	대덕1로 80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2-01-01	법정리 명칭인 대덕동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
9	송악읍 도원리 251	송악읍 고도원길 4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2-01-01	자연마을명칭인 고도원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
10	면천면 성상리 568-1	면천면 동문2길 74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2-01-01	면천읍성의 동쪽길
11	면천면 성상리 568-1	면천면 동문2길 76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2-01-01	면천읍성의 동쪽길
12	면천면 성상리 568-1	면천면 동문2길 80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2-01-01	면천읍성의 동쪽길
13	신평면 매산리 29-27	신평면 매산해변길 134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2-01-01	매산리 해변을 지나는 도로
14	정미면 봉생리 112-7	정미면 봉담길 14-12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2-01-01	자연마을명칭인 봉담 활용
15	송산면 유곡리 1117	송산면 서정3길 17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3-08-06	자연마을 명칭 서정을 활용 "서정3길"로 명명
16	석문면 통정리 1519	석문면 산단3로10길 72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3-12-03	국가 산업단지의 명칭을 활용 선정
17	면천면 죽동리 442-37	면천면 상부2길 5	2021-01-18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21-01-15	자연마을명칭인 상부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
	석문면 교로리 126	석문면 원광길 163	2012-01-01	단순변경 (멸실 후 신축 기존 건물번호 유지)	2012-01-01	자연마을명칭인 원광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

당진시 고시 제2021-22호

당진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)
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1월 22일

당 진 시 장

가. 당진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) 결정(변경) 조서 : 붙임1 참조

나. 실효일자 : 2020. 12. 23.

다. 실효사유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 도시계획시설의 최초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 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함

라. 당진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)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도 : 붙임2 참조

마.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(☎041-350-441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붙임1. 당진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1. 도시계획시설

가. 교통시설

1) 도로

가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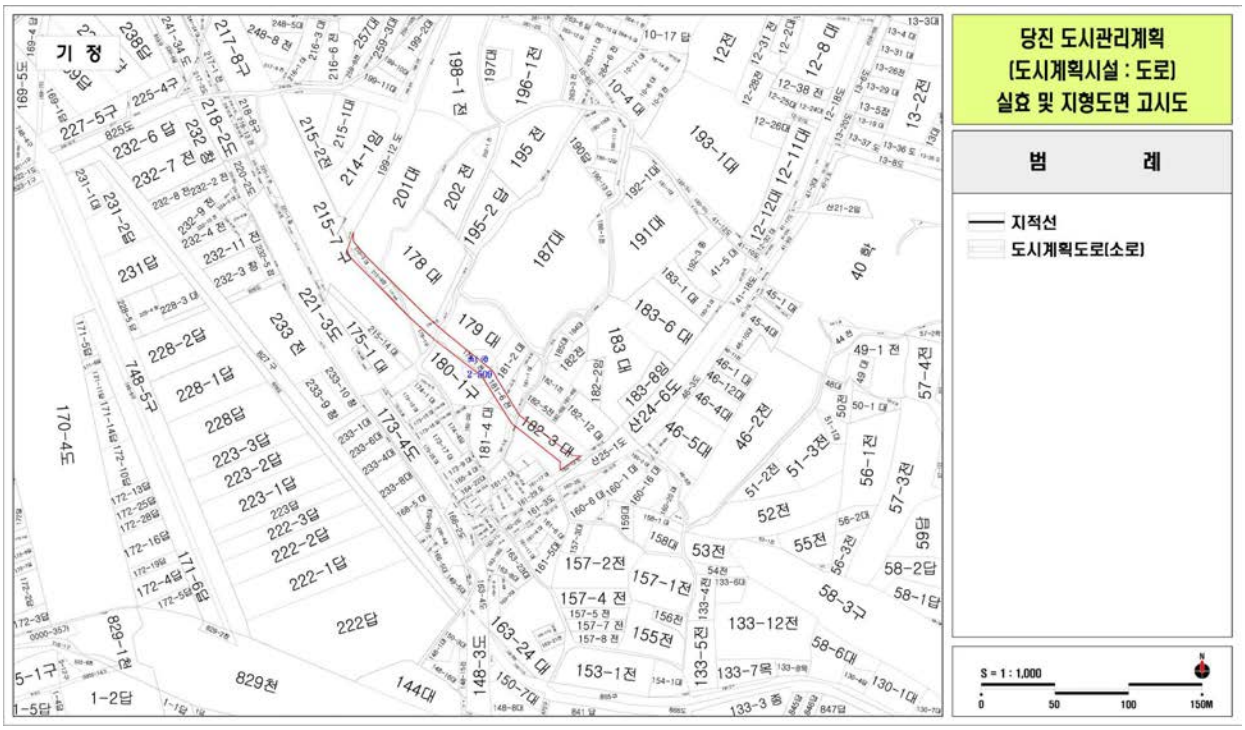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2	509	8	국지도로	212	중로1-502 신평면거산리182-13	소로2-506 신평면거산리210-3	일반도로	-	충남고시제179호 2000.12.23.	-
변경	소로	2	509	8	국지도로	129	신평면거산리179-1	소로2-506 신평면거산리210-3	일반도로	-	충남고시제179호 2000.12.23.	미집행 구간의 실효

나)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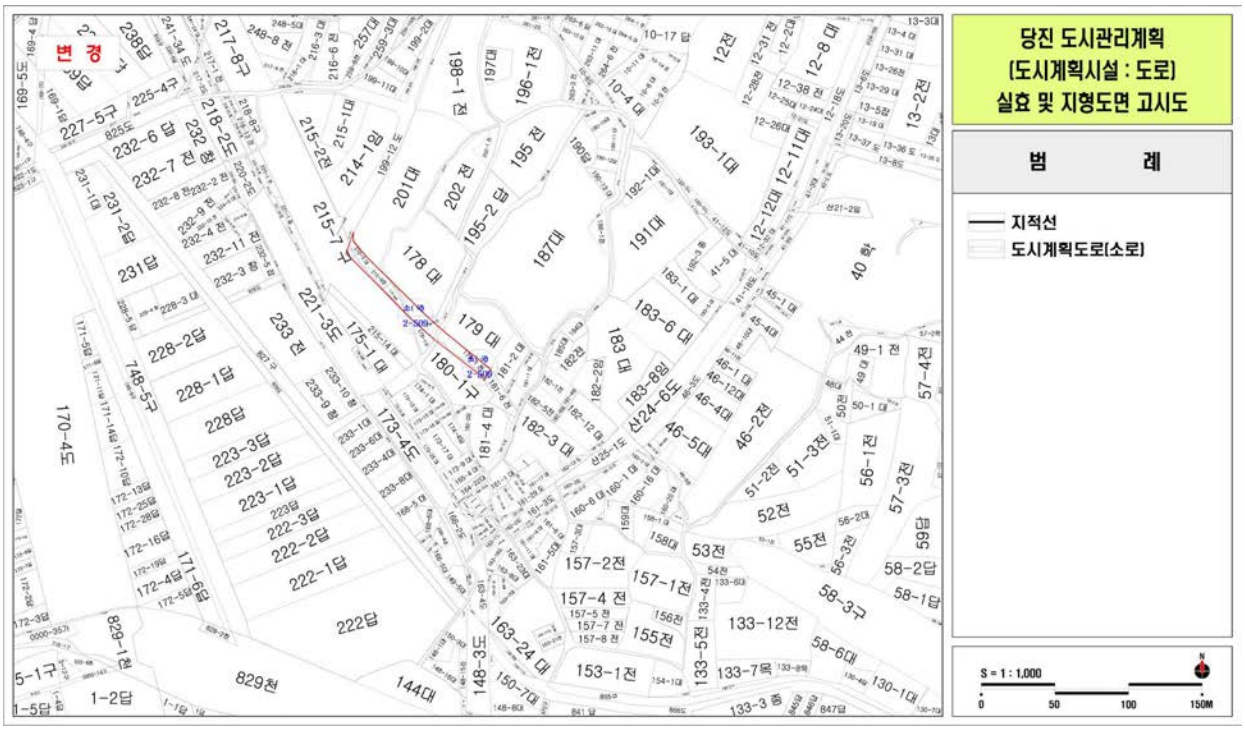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2-509	소로2-509	◦도로 변경 ◦B=8m ◦L=212m→129m 감)83m	◦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분집행 도시계획시설(도로)의 미집행 구간 실효

붙임2. 당진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도

○ 기정



○ 변경



당진시 고시 제2021-23호

고대면 진관1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

당진시 고대면 진관1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내지 제59조, 동법시행령 제82조,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 시행지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01. 21.

당 진 시 장 당진시장인

1. 사 업 명 : 고대면 진관1리 마을만들기사업
2. 사업의 목적 :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농촌다움을 유지·보전하여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 도모
3. 사 업 비 : 500백만원
4. 주요사업내용
   가. 위 치 :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일원
   나. 사업범위 : 진관1리 일원
   다. 주요사업
   - 기초생활기반확충 : 숟가락이음터
   - 지역경관개선 : 공동체로 통하는 안길정비, 공동체로 통하는 경관조성
   - 지역역량강화 : 스스로 경관학교, 전통으로 이어지다. 주민교육 등
5. 사업시행자 : 당진시장
6. 사업예정기간 : 2020. 1. ~ 2022. 12.
7. 관계도서의 비치
   - 관계도서는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(☎041-350-3183)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당진시 고시 제2021-24호

신평면 신송1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

당진시 신평면 신송1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내지 제59조, 동법시행령 제82조, 충남형마을만들기 시행지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01. 21.

당 진 시 장 

1. 사 업 명 : 신평면 신송1리 마을만들기사업
2. 사업의 목적 :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농촌다움을 유지·보전하여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 도모
3. 사 업 비 : 500백만원
4. 주요사업내용
   가. 위 치 :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송리 일원
   나. 사업범위 : 신송1리 일원
   다. 주요사업
   - 기초생활기반확충 : 풍년기원 굴뚝
   - 지역경관개선 : 굴뚝마을 밝음길
   - 지역역량강화 : 굴뚝마을 공공디자인, 경관협의체 운영지원, 주민역량강화 등
5. 사업시행자 : 당진시장
6. 사업예정기간 : 2020. 1. ~ 2022. 12.
7. 관계도서의 비치
   - 관계도서는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(☎041-350-3183)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당진시 고시 제2021-25호

당진 도시관리계획(한정1지구 산업·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109-26번지 일원 당진 도시관리계획(한정1지구 산업·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당진 도시관리계획(한정1지구 산업·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(☎041-350-441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1년 1월 22일

당 진 시 장

가.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붙임 참조

나.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: 게재 생략

다. 당진 도시관리계획(한정1지구 산업·유통형 지구단위계획)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를 통해 열람 가능함

붙임.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없음

나.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없음

구분	도면표시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제한내용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850	한정1	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	충남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109-26번지 일원	-	130,503	당진군 고시 제2008-087호 (2008년 05월10일)	

2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조서: 변경없음

구분	도면표시번호	구역명	구역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850	한정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산업 유통형	충남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109-26번지 일원	130,503	-	130,503	

3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. 토지이용계획: 변경없음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 후	기 정	변 경	변경 후	
합 계		130,503	-	130,503	100.00	-	100.00	-
공업용지		88,066	-	88,066	67.48	-	67.48	-
유치업종용 공업용지		74,108	-	74,108	84.15	-	84.15	중분류 25, 29
그밖의 공업용지		13,958	-	13,958	15.85	-	15.85	중분류 28, 30
녹지용지	소계	26,983	-	26,983	20.68	-	20.68	-
	원형녹지	12,953	-	12,953	9.92	-	9.92	-
	조성녹지	14,030	-	14,030	10.75	-	10.75	-
공공시설용지	소계	15,454	-	15,454	11.84	-	11.84	-
	도로용지	13,250	-	13,250	10.15	-	10.15	-
	오수처리시설용지	1,184	-	1,184	0.91	-	0.91	-
	유수시설용지	1,020	-	1,020	0.78	-	0.78	-

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▨ 도로 총괄표

구분	류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	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
기정	소로	5	1,431	13,250	1	726	5,578	1	102	5,205	3	609	2,467

▨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1	818	12	국지도로	726	소로3-884 신평.한정리109-9	중로3-816 신평.한정리109-56	일반도로		당진고제87호 2008.05.10.	-
기정	소로	2	836	8	국지도로	102	소로1-818 신평.한정리109-52	소로3-884 신평.한정리109-17	일반도로			-
기정	소로	3	884	4	특수도로	464	소로1-818 신평.한정리109-9	소로2-836 신평.한정리109-17	보행자전용도로			-
기정	소로	3	885	4	특수도로	98	소로1-818 신평.한정리109-9	소로3-884 신평.한정리109-9	보행자전용도로			-
기정	소로	3	886	4	특수도로	47	소로1-818 신평.한정리307-8	신평.한정리109-55	보행자전용도로			-

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: 변경

도면번호	기정					변경					변경사항
	가구번호	면적(㎡)	획지 위치		획지 면적(㎡)	가구번호	면적(㎡)	획지 위치		획지 면적(㎡)	
A	1BL	49,665	A-1	한정리 109-26번지	32,455	1BL	49,665	A-1	한정리 109-26번지	32,455	-
			A-2	한정리 109-28번지	3,200			A-2	한정리 109-28번지	3,200	-
			A-3	한정리 109-29번지	6,954			A-3	한정리 109-29번지	6,954	-
			A-4	한정리 109-30번지	7,056			A-4	한정리 109-30번지	7,056	-
			소 계		49,665			소 계		49,665	-
B	2BL	38,401	B-1	한정리 산74-2번지	14,832	2BL	38,401	B-1	한정리 109-10번지	14,832	-
			B-2	한정리 산74-2번지	8,154			B-2	한정리 109-11번지	8,154	-
			B-3	한정리 산74-2번지	8,411			B-3	한정리 109-12번지	8,411	-
			B-4	한정리 산74-2번지	7,004			B-4	한정리 109-14번지	7,004	-
			소 계		38,401			소 계		38,401	-
C	3BL	2,204	C-1	한정리 산74-2번지	1,184	3BL	2,204	C-1	한정리 109-8번지	1,184	-
			C-2	한정리 산74-2번지	1,020			C-2	한정리 109-6번지	1,020	면적 변경 없으나 분할측량에 따른 선형변경사항 반영
			소 계		2,204			소 계		2,204	-
E	녹지용지	26,992	E-1	한정리 109-37번지	12,088	녹지용지	26,994	E-1	한정리 109-37번지	12,088	-
			E-2	한정리 109-26번지	8,123			E-2	한정리 109-26번지	8,123	-
			E-3	한정리 109-26번지	2,006			E-3	한정리 109-26번지	2,006	-
			E-4	한정리 280-3번지	1,698			E-4	한정리 280-3번지	1,698	-
			E-5	한정리 109-16번지	741			E-5	한정리 109-16번지	741	-
			E-6	한정리 109-5번지	1,462			E-6	한정리 109-5번지	1,462	면적 변경 없으나 분할측량에 따른 선형변경사항 반영
			E-7	한정리 109-26번지	865			E-7	한정리 109-26번지	865	-
			소 계		26,983			소 계		26,983	-
합 계					117,253	합 계				117,253	

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-	■ 가구 및 획지 면적 변경	- 1가구 : 변경없음 - 2가구 : 변경없음 - 3가구 · C-2 : 면적변경사항 없으나 분할측량에 따른 선형변경사항 반영 - 녹지용지 · E-6 : 면적변경사항 없으나 분할측량에 따른 선형변경사항 반영

라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조서: 변경없음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4">계획내용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 rowspan="16">지구단위계획결정(안)</td><td rowspan="16">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</td><td>위 치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계획내용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A-1</td><td rowspan="4">용 도</td><td rowspan="3">허용</td><td colspan="2">■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(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)
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</td><td rowspan="5">-변경없음</td></tr>
<tr><td>중분류</td><td>업 종</td></tr>
<tr><td>25</td><td>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</td></tr>
<tr><td>불허</td><td colspan="2">■허용용도 이외의 시설</td></tr>
<tr><td>건폐율</td><td colspan="3">■ 60% 이하</td></tr>
<tr><td>용적률</td><td colspan="3">■150% 이하</td></tr>
<tr><td>높 이</td><td colspan="3">■4층(20m이하)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A-2</td><td rowspan="4">용 도</td><td rowspan="3">허용</td><td colspan="2">■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(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)</td><td rowspan="5">-변경없음</td></tr>
<tr><td>중분류</td><td>업 종</td></tr>
<tr><td>29</td><td>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</td></tr>
<tr><td>불허</td><td colspan="2">■허용용도 이외의 시설</td></tr>
<tr><td>건폐율</td><td colspan="3">■ 60% 이하</td></tr>
<tr><td>용적률</td><td colspan="3">■150% 이하</td></tr>
<tr><td>높 이</td><td colspan="3">■4층(20m이하)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A-3</td><td rowspan="4">용 도</td><td rowspan="3">허용</td><td colspan="2">■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(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)</td><td rowspan="5">-변경없음</td></tr>
<tr><td>중분류</td><td>업 종</td></tr>
<tr><td>30</td><td>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</td></tr>
<tr><td>불허</td><td colspan="2">■허용용도 이외의 시설</td></tr>
<tr><td>건폐율</td><td colspan="3">■ 60% 이하</td></tr>
<tr><td>용적률</td><td colspan="3">■150% 이하</td></tr>
<tr><td>높 이</td><td colspan="3">■4층(20m이하)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A-4</td><td rowspan="4">용 도</td><td rowspan="3">허용</td><td colspan="2">■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(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)</td><td rowspan="5">-변경없음</td></tr>
<tr><td>중분류</td><td>업 종</td></tr>
<tr><td>25
30</td><td>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</td></tr>
<tr><td>불허</td><td colspan="2">■허용용도 이외의 시설</td></tr>
<tr><td>건폐율</td><td colspan="3">■ 60% 이하</td></tr>
<tr><td>용적률</td><td colspan="3">■150% 이하</td></tr>
<tr><td>높 이</td><td colspan="3">■4층(20m이하)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4">계획내용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 rowspan="29">지구단위계획결정(안)</td><td rowspan="29">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</td><td>위 치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3">계획내용</td><td rowspan="29">변경 없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B-1</td><td rowspan="3">용 도</td><td rowspan="3">허용</td><td colspan="2">■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(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)</td></tr>
<tr><td>중분류</td><td>업 종</td></tr>
<tr><td>29</td><td>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</td></tr>
<tr><td>불허</td><td colspan="2">■허용용도 이외의 시설</td></tr>
<tr><td>건폐율</td><td colspan="3">■ 60% 이하</td></tr>
<tr><td>용적률</td><td colspan="3">■150% 이하</td></tr>
<tr><td>높 이</td><td colspan="3">■4층(20m이하)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B-2</td><td rowspan="3">용 도</td><td rowspan="3">허용</td><td colspan="2">■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(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)</td></tr>
<tr><td>중분류</td><td>업 종</td></tr>
<tr><td>25
29</td><td>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</td></tr>
<tr><td>불허</td><td colspan="2">■허용용도 이외의 시설</td></tr>
<tr><td>건폐율</td><td colspan="3">■ 60% 이하</td></tr>
<tr><td>용적률</td><td colspan="3">■150% 이하</td></tr>
<tr><td>높 이</td><td colspan="3">■4층(20m이하)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B-3</td><td rowspan="3">용 도</td><td rowspan="3">허용</td><td colspan="2">■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(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)</td></tr>
<tr><td>중분류</td><td>업 종</td></tr>
<tr><td>25
29</td><td>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</td></tr>
<tr><td>불허</td><td colspan="2">■허용용도 이외의 시설</td></tr>
<tr><td>건폐율</td><td colspan="3">■ 60% 이하</td></tr>
<tr><td>용적률</td><td colspan="3">■150% 이하</td></tr>
<tr><td>높 이</td><td colspan="3">■4층(20m이하)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B-4</td><td rowspan="3">용 도</td><td rowspan="3">허용</td><td colspan="2">■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(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)</td></tr>
<tr><td>중분류</td><td>업 종</td></tr>
<tr><td>25</td><td>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</td></tr>
<tr><td>불허</td><td colspan="2">■허용용도 이외의 시설</td></tr>
<tr><td>건폐율</td><td colspan="3">■ 60% 이하</td></tr>
<tr><td>용적률</td><td colspan="3">■150% 이하</td></tr>
<tr><td>높 이</td><td colspan="3">■4층(20m이하)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C-1</td><td rowspan="2">용 도</td><td>허용</td><td colspan="2">■오수처리시설</td></tr>
<tr><td>불허</td><td colspan="2">■허용용도 이외의 시설</td></tr>
<tr><td>건폐율</td><td colspan="3">■ 60% 이하</td></tr>
<tr><td>용적률</td><td colspan="3">■150% 이하</td></tr>
<tr><td>높 이</td><td colspan="3">■4층(20m이하)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C-2</td><td rowspan="2">용 도</td><td>허용</td><td colspan="2">■유수지</td></tr>
<tr><td>불허</td><td colspan="2">■허용용도 이외의 시설</td></tr>
<tr><td>건폐율</td><td colspan="3">■ 60% 이하</td></tr>
<tr><td>용적률</td><td colspan="3">■150% 이하</td></tr>
<tr><td>높 이</td><td colspan="3">■4층(20m이하)</td></tr>
</table>

마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조서: 변경없음

▨ 교통처리계획

구 분	지점	교 통 처 리 방 안
진 출 입 동 선	Ⓐ	◦시도13호선과 사업지 진출입로 접속부에 가·감속 완화차로 및 우회전차로 설치 - 가속차로 : B=3.75m, L=110.0m - 감속차로 : B=3.75m, L=65.0m - 우회전차로 : B=3.5m, L=50.0m
	Ⓑ	◦사업지 내부가로 및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
	-	◦사업지 이용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회전반경(R=12.0m이상) 확보
	Ⓒ	공장시설 진출입 불허구간 제시 : 4개소
대중교통 및 보 행	-	◦사업지 개발후 버스이용자 편의를 위해 버스노선 조정 및 노선신설 건의
	Ⓓ	◦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: 2개소 - 보도턱 낮추기 및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
	Ⓔ	◦사업지 내부가로상에 편측 및 양측보도 설치
주 차 시 설	-	◦주차시설의 적정성 검토 - 법정주차대수 : 139대 - 주차수요대수(2015년) : 301대 - 주차수요에 부응하는 주차면수 확보 - 장애인 주차면수는 설치기준인 계획주차의 3%이상 확보 유도
교 통 안 전 및 기 타	Ⓕ	◦교통안전시설 설치 - 이미지험프 설치 : 1개소 - 험프식횡단보도 설치 : 1개소 - 과속방지턱 설치 : 1개소 -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: 2개소

당진시 고시 제2021-29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·폐지 현황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5항, 제24조제1항,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1. 25.

당 진 시 장

○ **도로명주소(부여) :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산동로 300 외 4건**

지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붙 임 참 조			

○ **도로명주소(폐지) :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항곡1길 12 외 1건**

지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붙 임 참 조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(☎350-3820~3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**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**

- 도로명주소는 2021. 1. 25.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**도로명주소 변경 등**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※단, 2011. 12. 31.까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변경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

○ **참고사항**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<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1/25>

순번	지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자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자	도로명부여사유
1	정미면 신시리 98-4	정미면 산동로 300	2021-01-25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2-01-01	자연마을명칭인 산동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
2	신평면 도성리 328-1	신평면 샛터로 152-53	2021-01-25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2-01-01	자연마을명칭인 샛터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
3	신평면 신흥리 42-50	신평면 원신당로 191	2021-01-25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2-01-01	자연마을명칭인 원신당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
4	면천면 송학리 998	면천면 대조동길 19	2021-01-25	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	2012-01-01	자연마을명칭인 대조동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
5	합덕읍 소소리 610	합덕읍 합덕산단4로 202	2021-01-25	기존건물 도로명주소 부여(직권)	2011-09-06	합덕산업단지 신규 도로개설
	석문면 삼봉리 218-13	석문면 삼봉산로 350-30	2012-01-01	단순변경 (멸실 후 신축 기존 건물번호 유지)	2012-01-01	삼봉산의 명칭활용

<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 1/25 >

순번	지번	폐지 도로명주소	폐지고시일자	폐지사유	비고
1	고대면 항곡리 422	고대면 항곡1길 12	2021-01-25	건물멸실	
2	신평면 금천리 51	신평면 새마지로 162-21	2021-01-25	건물멸실	

당진시 공고 제2021-161호

「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1년 1월 19일

당 진 시 장

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충청남도 기관정기감사” 결과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지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소상공인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지 제한하는 규정 삭제(안 제1조, 제4조)

- (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⇨ 시에 사업장을 두고)

나. 특례보증 지원조항에 대한 용어 정비(안 제8조)

- (특례보증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에게 지원)

다. 「소상공인 기본법」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(안 제2조)

3. 관계법령

○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소상공인기본법」

4. **조례안** : 붙임

5. **입법예고기간** : 2021. 1. 19. ~ 2021. 2. 9.(21일간)

6. **의견제출**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9일 18:00까지 당진시장(참조: 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,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※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: 당진시청 경제과(지역경제팀)

주소 :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(우편번호 : 31773)

전화 : 041-350-4017 팩스 : 041-350-4049 이메일 : hj0357@korea.kr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**조례명 :**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견	비 고

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주소와 사업장”을 “사업장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를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주소와 사업장”을 “사업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특례보증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수”를 “수 있으며,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”로 한다.

제10조의 2를 제10조의2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당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사업장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---------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----------.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,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 다만,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는 제7조제2호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.	제4조(적용범위) ---------- 사업장----------. ----------.
제8조(특례보증 지원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 ③ (생 략)	제8조(특례보증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-----. ----- 수 있으며,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---. 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의 2(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	제10조의2(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

공인에 대한 지원) ① (생 략) ② (생 략)	공인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